

심 사 보 고 서

의안 번호	92
----------	----

2018년 8월 30일
운 영 위 원 회

1. 심사경과

가. 발의일자 및 발의자 : 2018.8.16. 이동현 의원 외 13명 공동발의

나. 회부일자 : 2018.8. 21.

다. 상정일자 : 제282회 임시회 폐회중 제2차 운영위원회

- 2018년 8월 30일 상정·의결(수정 가결)

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서울특별시의회는 정부와 서울시의 다양한 청년 정책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청년 실업률과 청년들의 고용 불안에 대한 문제의식 및 책임감을 느끼고 있음.
- 이에 서울특별시의회는 청년문제의 실질적인 해결방안을 모색하여 어려움에 직면한 청년들을 대변하고, 청년들의 삶의 질 향상뿐만 아니라 국가경쟁력과 사회적 안정을 도모할 필요가 있음.
- 서울특별시의회에서는 「서울특별시 청년일자리 기본조례」, 「서울특별시 청년주거 기본조례」 등 청년관련 조례가 실효성을 갖고 청년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조례를 제·개정함으로써 정책대안을 제시할 필요가 있음.

- 또한 청년문제는 일자리, 복지, 주거, 청년 일반 정책 등의 다양한 분야에 분포되어 있어 서울시 각 실·국과 서울시의회가 함께 해결방안을 모색해야 하므로 이를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이 불가피함.
- 따라서 청년문제에 대한 현황조사를 바탕으로 청년관련 조례 제·개정 및 청년 당사자들과의 소통과 협의를 통한 실질적인 정책방안을 도출할 수 있는 청년발전 특별위원회의 구성을 제안함.

3. 참고사항

가. 관계법규 : 「지방자치법」 제56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6조, 「서울특별시의회 기본조례」 제37조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기타사항 : 해당사항 없음.

4.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수석전문위원 박노수)

1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의 취지

- 이번 「서울특별시의회 청년발전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¹⁾은 청년문제가 국가적 재난수준으로 인식되고 있는 가운데, 청년의 일자리, 복지, 주거, 청년 일반 정책 등의 실태와 문제점을 파악해 다양하고 실질적인 정책방안을 도출하고자 제안되었음.

2 특별위원회 구성의 타당성 검토

-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통계²⁾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청년고용률은 OECD 가입국 가운데 최하위권을 머물고 있고, 청년실업률도 주요국들과 달리 유독 악화 추세를 보이고 있음.³⁾
 - 우리나라의 15~29세 인구 928만2000명 중 청년고용률이 42.1%에 불과하며, 이는 미국(60.6%), 일본(56.8%), OECD 평균(53.3%)에 크게 못 미치는 결과로 OECD 35개국 중 30위에 해당함(2017년 기준).
- 또한 2018년 3월 관계부처 합동 회의 자료에 따르면 취업애로청년계층*도 112만명(22.7%)에 이르는 등 청년 실업난이 심각함.⁴⁾

*실업자 + 시간관련 추가취업가능자 + 잠재경제활동인구

1) 「지방자치법」 제56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6조, 「서울특별시의회 기본조례 제37조에 근거하여 구성됨.」

2) OECD 국가 청년 고용률 순위, OECD 통계

3) '한국청년 고용률 42%, OECD 중 최악' 중 OECD 통계자료, 매일경제, 2018. 7. 10

4) '청년 일자리 대책', 관계부처 합동, 2018. 3. 5.

- 아울러 통계청의 ‘18년 ‘7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고용관련 지표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최악의 수준이며 연령대별 고용률은 청년층(15세~29세)이 43.1%로 심각한 수준임.⁵⁾
- 또한 ‘90년대 이후 청년고용률은 전체실업률과의 격차가 2배로 확대되는 등 부진이 심화되었고, 청년 체감실업률도 통계 작성(‘15년) 이후 20% 지속 상회하는 등 국가재난 수준의 청년고용위기에 직면하고 있는 실정임.

※ 전체/청년 실업률 격차(%): 90년대 3.4%p (3.3/6.7) → ‘17년 6.1%p (3.7/9.8)
 청년 체감실업률(%): (‘15)21.9, (‘16)22.1, (‘17)22.7

※ 출처: 관계부처합동회의(2018. 3. 청년일자리 대책)

- 청년층은 사회에 최초로 진입하는 이행기로 독립적인 사회구성원으로서 사회적 보호 및 지원이 필요한 공적 지원대상이라 할 수 있음.
- 그러나 현재 국가 재난수준의 청년고용 문제는 청년 주거빈곤⁶⁾, 부채, 실업 등의 문제로 확대되어 특단의 대책이 필요한 시점임.
 - 청년 인적 자원을 사회 현장에서 활용할 수 없다면 국가 미래는 장기적으로 저성장에서 벗어날 수 없고, 세대 간의 갈등과 대립으로 이어져 정치적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점에서 청년 문제는 시급한 국가적 현안이라 할 수 있음.
- 현재 중앙정부 차원에서 시행되는 청년취업성공패키지, 청년취업

5) '18. 07, KOSIS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6) 서울시 1인가구 청년(20세 ~34) 주거빈곤율 37%(2015), 한국도시연구소.

*주거 빈곤 비율: 최저주거기준(방수·면적·시설기준)미달, 지하·옥탑 거주 또는 주택 이외의 기타 거처 거주, 과도한 주거비 부담(소득 대비 주거비 비율 30% 초과)에 해당하는 비율

아카데미, 중소기업 청년취업인턴제, 공공기관 채용인턴제 등과 서울시의 청년수당사업이 시행되고 있으나, 실질적으로 청년에게 수혜되는 정책들은 일부에 그치고 있어 정책의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음 (감사원, 2016).

- 올해 정부는 이러한 청년문제를 인식하고 취업 청년 소득·주거·자산형성 및 고용증대기업 지원강화, 창업활성화, 새로운 취업기회 창출, 즉시 취·창업할 수 있는 실질적 역량 강화 등 ‘청년일자리 4대 분야 중점 추진과제’와 사업계획을 발표함.
- 이에 서울시도 청년층의 높은 실업률, 주거 빈곤 등 악순환의 시스템에 놓인 청년들이 안정적으로 사회에 진입할 수 있도록 사회안전망을 구축하고, 서울시 청년의 특성 등을 고려한 현장중심의 맞춤형 정책대응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하겠음.
- 이상을 종합하면, 청년문제가 사회 구조적 문제점과 연관되고 청년 정책이 여러 상임위원회 소관과 관련되어 사회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 수렴을 토대로 서울시의회 차원의 종합적이고 다각적인 정책 대안 발굴 필요성이 있으므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됨.⁷⁾
- 다만 특별위원회의 목적이 다양한 분야에 분포되어 있는 청년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종합적인 청년정책을 도출하기 위함이므로 그 명칭을 서울특별시의회 청년 특별위원회로 변경하여 결의안의 취지와 목적을 명확히 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보임 .

7) 「서울시의회 기본조례」 제37조(특별위원회) ① 의회는 여러 상임위원회의 소관과 관련되거나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한 안건을 효율적으로 심사하기 위하여 의회의 의결로 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다.

3 관련 상임위원회 의견 조희 결과

- 동 안건과 관련하여 「서울특별시의회 기본조례」에 따른 관련 상임위원회 의견조희 결과, 관련 상임위원회(행정자치위원회, 도시계획관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회신함.
 - 행정자치위원회는 별도 의견 없음으로 회신하였음.
- 도시계획관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의견을 제시함.
 - 일자리·주거·기초생계보장 등 청년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한 시점임. 특히 청년발전을 위한 정책개발은 관계부서 간 긴밀한 협의가 필요함.
 - 일례로 청년임대주택, 사회주택 공급 시 청년 창업공간 등 청년활동 공간의 제공과 같이 주택공급부서와 경제정책부서의 협의가 중요할 수 있음.
 - 청년계층의 실업률과 주거불안이 더욱 심화되고 있고, 청년정책의 범위가 포괄적임을 감안해 볼 때 10대 의회에서도 청년발전 특별위원회를 구성·운영하여 지속적인 정책대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음.

5. 질의 및 답변요지 : 없음.

6. 토론요지 : 생략

7. 수정안의 요지

가. 수정이유

- 특별위원회 활동 목적의 명확성 등을 위해 특별위원회 명칭을 수정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특별위원회 명칭을 ‘서울특별시의회 청년발전 특별위원회’에서 ‘서울특별시의회 청년 특별위원회’로 변경함.

다. 참고사항

-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제56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6조, 「서울특별시의회 기본조례」 제37조
- 예산조치 : 해당 없음.
- 기타사항 : 해당 없음.

8. 심 사 결 과 : 수정안 가결

(재적의원 13명, 출석위원 12명 전원 찬성)

9. 소수 의견의 요지 : 없 음.

10. 기타 필요한 사항 : 없 음.

서울특별시의회 청년발전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한 수정안

의안 번호	관련 92
----------	----------

제안년월일 : 2018년 8월 30일
제안자 : 운영위원장

1. 수정이유

- 특별위원회 활동 목적의 명확성 등을 위해 특별위원회 명칭을 수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특별위원회 명칭을 ‘서울특별시의회 청년발전 특별위원회’에서 ‘서울특별시의회 청년 특별위원회’로 변경함.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규 : 「지방자치법」 제5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6조, 「서울특별시의회 기본조례」 제37조
- 나. 예산조치 : 해당 없음.
- 다. 기타사항 : 해당 없음.

서울특별시의회 청년발전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한 수정안

서울특별시의회 청년발전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명 “서울특별시의회 청년발전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서울특별시의회 청년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으로 한다.

주문 중 “서울특별시의회 청년발전 특별위원회”를 “서울특별시의회 청년 특별위원회”로 한다.

제안이유 중 “청년발전 특별위원회”를 “서울특별시의회 청년 특별위원회”로 한다.

첨부된 결의안 중 “서울특별시의회 청년발전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서울특별시의회 청년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으로 하고, “서울특별시의회 청년발전 특별위원회”를 “서울특별시의회 청년 특별위원회”로 하며, “서울특별시의회 의원”을 “서울특별시의회의원”으로 한다.

수정조문 대비표

원안	수정안
서울특별시의회 청년발전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서울특별시의회 청년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p>1. 주문</p> <p>가. 「지방자치법」 제5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56조, 「서울특별시의회 기본조례」 제37조의 규정에 따라 서울시 청년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u>서울특별시의회 청년발전 특별위원회</u>” 를 구성한다.</p> <p>나. 위원 수는 15명 이내로 하며 활동기간은 위원선임일로부터 6개월로 하되 필요시 본회의의 의결로 연장할 수 있다.</p> <p>다. 본 특별위원회는 활동기간이 종료하기 전 까지 활동결과 보고서를 본회의에 제출한다.</p> <p>2. 제안이유</p> <p>서울특별시의회는 정부와 서울시의 다양한 청년 정책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청년 실업률과 청년들의 고용 불안에 대한 문제의식 및 책임감을 느끼고 있음.</p> <p>이에 서울특별시의회는 청년문제의 실질적인 해결방안을 모색하여 어려움에 직면한 청년들을 대변하고, 청년들의 삶의 질 향상뿐만 아니라 국가경쟁력과 사회적 안정을 도모할 필요가 있음.</p> <p>서울특별시의회에서는 「서울특별시 청년일자리 기본조례」, 「서울특별시 청년주거 기본조례」 등 청년관련 조례가 실효성을 갖고 청년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조례를 제·개정함으</p>	<p>1. 주문</p> <p>가. 「지방자치법」 제5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56조, 「서울특별시의회 기본조례」 제37조의 규정에 따라 서울시 청년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u>서울특별시의회 청년 특별위원회</u>” 를 구성한다.</p> <p>나. 위원 수는 15명 이내로 하며 활동기간은 위원선임일로부터 6개월로 하되 필요시 본회의의 의결로 연장할 수 있다.</p> <p>다. 본 특별위원회는 활동기간이 종료하기 전 까지 활동결과 보고서를 본회의에 제출한다.</p> <p>2. 제안이유</p> <p>서울특별시의회는 정부와 서울시의 다양한 청년 정책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청년 실업률과 청년들의 고용 불안에 대한 문제의식 및 책임감을 느끼고 있음.</p> <p>이에 서울특별시의회는 청년문제의 실질적인 해결방안을 모색하여 어려움에 직면한 청년들을 대변하고, 청년들의 삶의 질 향상뿐만 아니라 국가경쟁력과 사회적 안정을 도모할 필요가 있음.</p> <p>서울특별시의회에서는 「서울특별시 청년일자리 기본조례」, 「서울특별시 청년주거 기본조례」 등 청년관련 조례가 실효성을 갖고 청년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조례를 제·개정함으</p>

원안	수정안
<p>로써 정책대안을 제시할 필요가 있음.</p> <p>또한 청년문제는 일자리, 복지, 주거, 청년 일반 정책 등의 다양한 분야에 분포되어 있어 서울시 각 실·국과 서울시의회가 함께 해결방안을 모색해야 하므로 이를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이 불가피함.</p> <p>따라서 청년문제에 대한 현황조사를 바탕으로 청년관련 조례 제·개정 및 청년 당사자들과의 소통과 협의를 통한 실질적인 정책방안을 도출할 수 있는 <u>청년발전 특별위원회</u>의 구성을 제안함.</p>	<p>로써 정책대안을 제시할 필요가 있음.</p> <p>또한 청년문제는 일자리, 복지, 주거, 청년 일반 정책 등의 다양한 분야에 분포되어 있어 서울시 각 실·국과 서울시의회가 함께 해결방안을 모색해야 하므로 이를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이 불가피함.</p> <p>따라서 청년문제에 대한 현황조사를 바탕으로 청년관련 조례 제·개정 및 청년 당사자들과의 소통과 협의를 통한 실질적인 정책방안을 도출할 수 있는 <u>서울특별시의회 청년 특별위원회</u>의 구성을 제안함.</p>
<p>서울특별시의회 청년발전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p>	<p>서울특별시의회 청년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p>
<p>국가의 미래를 책임질 청년들이 정부와 서울시의 다양한 청년 정책에도 불구하고 위험한 수준의 청년 실업률과 고용 불안에 시달리며 일자리, 복지, 주거, 교육 등의 다양한 분야에 걸쳐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는 현재의 실태 속에서 우리는 서울시 시의원이자 한 시민으로서 문제의식을 갖고 책임감을 가지려 한다.</p> <p>이에 우리는 청년들의 입장을 대변하고 청년 문제의 실질적인 해결방안을 모색하여 청년들의 삶의 질 향상뿐만 아니라 국가경쟁력과 사회적 안정을 도모하고자 한다.</p> <p>또한, 우리는 「서울특별시 청년일자리 기본조례」, 「서울특별시 청년주거 기본조례」 등의 청년관련 조례가 실효성을 갖고 청년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고, 정책대안을 제시하는 등 서울특별시 의회 차원에서 맡은바 임무를 다하려고 한다.</p> <p>서울시의 10% 넘는 청년실업률, 40%에 이르</p>	<p>국가의 미래를 책임질 청년들이 정부와 서울시의 다양한 청년 정책에도 불구하고 위험한 수준의 청년 실업률과 고용 불안에 시달리며 일자리, 복지, 주거, 교육 등의 다양한 분야에 걸쳐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는 현재의 실태 속에서 우리는 서울시 시의원이자 한 시민으로서 문제의식을 갖고 책임감을 가지려 한다.</p> <p>이에 우리는 청년들의 입장을 대변하고 청년 문제의 실질적인 해결방안을 모색하여 청년들의 삶의 질 향상뿐만 아니라 국가경쟁력과 사회적 안정을 도모하고자 한다.</p> <p>또한, 우리는 「서울특별시 청년일자리 기본조례」, 「서울특별시 청년주거 기본조례」 등의 청년관련 조례가 실효성을 갖고 청년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고, 정책대안을 제시하는 등 서울특별시 의회 차원에서 맡은바 임무를 다하려고 한다.</p> <p>서울시의 10% 넘는 청년실업률, 40%에 이르</p>

원안	수정안
<p>는 청년 1인가구의 주거 빈곤율, 신용악화의 원인인 학자금 부담, 실효성이 없는 청년 복지정책 등의 청년관련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서울시 각 실·국과 서울시의회가 함께 해결방안을 모색하여 청년문제를 해결하고자 한다.</p> <p>이에 청년 당사자들과의 소통과 협의를 통한 실질적인 청년정책을 도출하는 등 청년문제의 근본적 해결과 올바른 정책대안을 마련하고자 “서울특별시의회 청년발전 특별위원회”를 구성할 것을 결의한다.</p> <p style="text-align: center;">2018. 8. <u>서울특별시의회 의원</u> 일동</p>	<p>는 청년 1인가구의 주거 빈곤율, 신용악화의 원인인 학자금 부담, 실효성이 없는 청년 복지정책 등의 청년관련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서울시 각 실·국과 서울시의회가 함께 해결방안을 모색하여 청년문제를 해결하고자 한다.</p> <p>이에 청년 당사자들과의 소통과 협의를 통한 실질적인 청년정책을 도출하는 등 청년문제의 근본적 해결과 올바른 정책대안을 마련하고자 “서울특별시의회 청년 특별위원회”를 구성할 것을 결의한다.</p> <p style="text-align: center;">2018. 8. <u>서울특별시의회의원</u> 일동</p>

서울특별시의회 청년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1. 주 문

- 가. 「지방자치법」 제5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56조, 「서울특별시의회 기본조례」 제37조의 규정에 따라 서울시 청년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서울특별시의회 청년 특별위원회”를 구성한다.
- 나. 위원 수는 15명 이내로 하며 활동기간은 위원선임일로부터 6개월로 하되 필요시 본회의의 의결로 연장할 수 있다.
- 다. 본 특별위원회는 활동기간이 종료하기 전까지 활동결과 보고서를 본 회의에 제출한다.

2. 제안이유

- 서울특별시의회는 정부와 서울시의 다양한 청년 정책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청년 실업률과 청년들의 고용 불안에 대한 문제의식 및 책임감을 느끼고 있음.
- 이에 서울특별시의회는 청년문제의 실질적인 해결방안을 모색하여 어려움에 직면한 청년들을 대변하고, 청년들의 삶의 질 향상뿐만 아니라 국가경쟁력과 사회적 안정을 도모할 필요가 있음.
- 서울특별시의회에서는 「서울특별시 청년일자리 기본조례」, 「서울특별시 청년주거 기본조례」 등 청년관련 조례가 실효성을 갖고 청년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조례를 제·개정함으로써 정책대안을 제시할 필요가 있음.

- 또한 청년문제는 일자리, 복지, 주거, 청년 일반 정책 등의 다양한 분야에 분포되어 있어 서울시 각 실·국과 서울시의회가 함께 해결방안을 모색해야 하므로 이를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이 불가피함.
- 따라서 청년문제에 대한 현황조사를 바탕으로 청년관련 조례 제·개정 및 청년 당사자들과의 소통과 협의를 통한 실질적인 정책방안을 도출할 수 있는 서울특별시의회 청년 특별위원회의 구성을 제안함.

3. 참고 사항

- 가. 관련 법령 : 「지방자치법」 제5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6조, 「서울특별시의회 기본조례」 제37조
- 나. 예산 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 다. 기 타 : 없음.

서울특별시의회 청년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 국가의 미래를 책임질 청년들이 정부와 서울시의 다양한 청년 정책에도 불구하고 위험한 수준의 청년 실업률과 고용 불안에 시달리며 일자리, 복지, 주거, 교육 등의 다양한 분야에 걸쳐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는 현재의 실태 속에서 우리는 서울시 시의원이자 한 시민으로서 문제의식을 갖고 책임감을 가지려 한다.
- 이에 우리는 청년들의 입장을 대변하고 청년문제의 실질적인 해결방안을 모색하여 청년들의 삶의 질 향상뿐만 아니라 국가경쟁력과 사회적 안정을 도모하고자 한다.
- 또한, 우리는 「서울특별시 청년일자리 기본조례」, 「서울특별시 청년주거 기본조례」 등의 청년관련 조례가 실효성을 갖고 청년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고, 정책대안을 제시하는 등 서울특별시 의회 차원에서 맡은바 임무를 다하려고 한다.
- 서울시의 10% 넘는 청년실업률, 40%에 이르는 청년 1인가구의 주거빈곤율, 신용악화의 원인인 학자금 부담, 실효성이 없는 청년 복지정책 등의 청년관련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서울시 각 실·국과 서울시의회가 함께 해결방안을 모색하여 청년문제를 해결하고자 한다.
- 이에 청년 당사자들과의 소통과 협의를 통한 실질적인 청년정책을 도출하는 등 청년문제의 근본적 해결과 올바른 정책대안을 마련하고자 “서울특별시의회 청년 특별위원회”를 구성할 것을 결의한다.

2018. 8.

서울특별시의회의원 일동